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. 4. 28 선고 2021가단3973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7. H

8. I

9. J

변 론 종 결 2022. 4. 7.

판 결 선 고 2022. 4. 28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상속분계산표의 ‘최종상속지분’란 기재 피고들의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, 아산시 K 대 340㎡ 중 별지1 도면 표시 1,2,3,4,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(가)부분 지상 목조스레트지붕 단층주택 43㎡ 및 같은 도면 표시 5,6,7,8,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(나)부분 지상 시멘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무허가 창고 20㎡를 각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라.
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상속지분 표시를 제외하고는 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주문 기재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와 반환청구

2. 적용법조

가. 피고 D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나. 나머지 피고들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(자백간주에 의한 판결)

판사 심현지

별지